

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「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」 모집 공고

도시재생뉴딜 사업 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실행주체의 육성 지원을 위해 '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'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03.14

국토교통부, LH 도시재생 지원기구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「2018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」 모집
- 정 의 :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팀 형식으로 매칭*하여 구성, 뉴딜사업 추진 쉰 단계(구상, 사업화, 운영)에서 서비스 디자인 기법**, 경영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특정 과제(사업·창업, 재생사업계획 수립, 재생 이슈도출) 수행
 - * 지역주민과 전문가(컨설턴트)는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
 - ** 정책결정 및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목적(사업아이템 발굴 및 착수, 도시재생관련 계획수립 참여 등) 달성
- 공급자 중심의 도시재생 비전·목표 수립, 단위사업 결정 등 방식에서 벗어나, 주민이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도시재생 제도·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액션러닝 실시
- 다음단계로, 3개월 이후에도 지자체의 자체적인 비용지원이나 본격적인 사업(뉴딜 단위사업,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등) 추진 등을 통하여 과제결과물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자체에 권장

< 참고 : 일반 도시재생 컨설팅과의 차이점 >

- 뉴딜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자체가 자체적(용역업체, 지역도시재생위원회 등)으로 실시하거나, 국토부 내 사업과나 지원기구가 제공하는 자문·컨설팅과는 구별
-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은 주민이 주도하여 특정 과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집중 운영·관리하는 것임

□ 추진근거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*

*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 사업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,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, 전문가 파견·자문 및 기술 지원비 등

□ 주최·주관 : 국토교통부, LH 도시재생지원기구, 프로젝트팀 전문 지원기관(한국디자인진흥원 등)

□ 프로젝트 팀 구성 : 지역주민과 전문가그룹*으로 구성

* 전문가그룹 구성없이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주민 또는 조직의 경우도 신청가능 (추후 컨설턴트 매칭 지원)

- (주민) 일반주민, 예비 창업가 등으로 구성, 도시재생 계획수립·서비스 디자인 도입·사업화 등의 공급자이자 수요자 역할 수행

※ 프로젝트 팀은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, 구성원 구성은 지역 대표성, 도시재생교육 수료와 그간 공동체 관련사업 참여 등을 고려

※ 지역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수립 시, 직접 이해관계자 배제 (예 : 대상 사업지 인근 부동산 소유자 등)

- (전문가) 서비스디자이너, 도시재생 지원센터직원, 갈등관리 전문가, 건축·도시·금융 경영 분야전문가 등으로 구성, 사업화 아이템도출, 전문성 보완, 경영컨설팅, 현장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

※ 도시재생 지원센터직원이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, 지원센터 직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장 전문가 참여를 장려



□ 운영방식 : 준비단계에서부터 선정 후 사업 진행 및 완료까지의 과정을 5단계*로 구분하고 일정목표 달성시까지 운영

- * ① 지역현황진단(정보조사 및 현장사전답사, 행태관찰조사, 심층인터뷰) → ② Needs도출·구체화(문제점분석, 이해관계자 확인, 워크숍) → ③ 문제정의·과제도출(비즈니스아이템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) → ④ 사업·계획안 기획(세부 사업 추진방안 마련) → ⑤ 운영·모니터링(사업시행 및 모니터링)

단계/분야	계획수립 컨설팅(디자인 컨설팅)	사업화 컨설팅(경영 컨설팅)
지역현황 진단	- 지역의 물리적, 비 물리적(사회, 경제, 인문 환경 등) 현황 조사 - 주민 행태분석, 심층인터뷰 - 협업 가능한 관련 기관 (공공기관, 민간 기업, 대학 등) 확인	-
수요(needs) 도출구체화	- 주민 인터뷰 분석을 통한 지역의 심층적 니즈 파악 - 이해관계자 확인 - 이해관계자간 워크숍 등 진행	-
문제정의, 과제도출	- 프로젝트팀의 운영과정 설정 - 프로젝트팀 과제 결과물 (공간기획, 물리적 환경정비, 제도마련, 계획마련 등) 확정	-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및 설계
사업·계획안 기획	-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물(제품, 어플리케이션제작, 유휴 공간 활용방안 기획, 물리적 환경개선안, 경관협정 등 제도)로 만들어 내고 필요시 상용화	- 사업제안서 작성, 사업타당성 분석 - 법인설립 및 각종 지원제도 활용 지원 - 분야별 컨설팅 지원(회계/재무관리, 성과관리, 마케팅/영업 등)
사후운영 (사업운영, 계획안 실현)	- 사업운영 및 계획안 적용	- 조직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- 수익사업 성과평가 및 필요시 사후 컨설팅 지원

□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에 대한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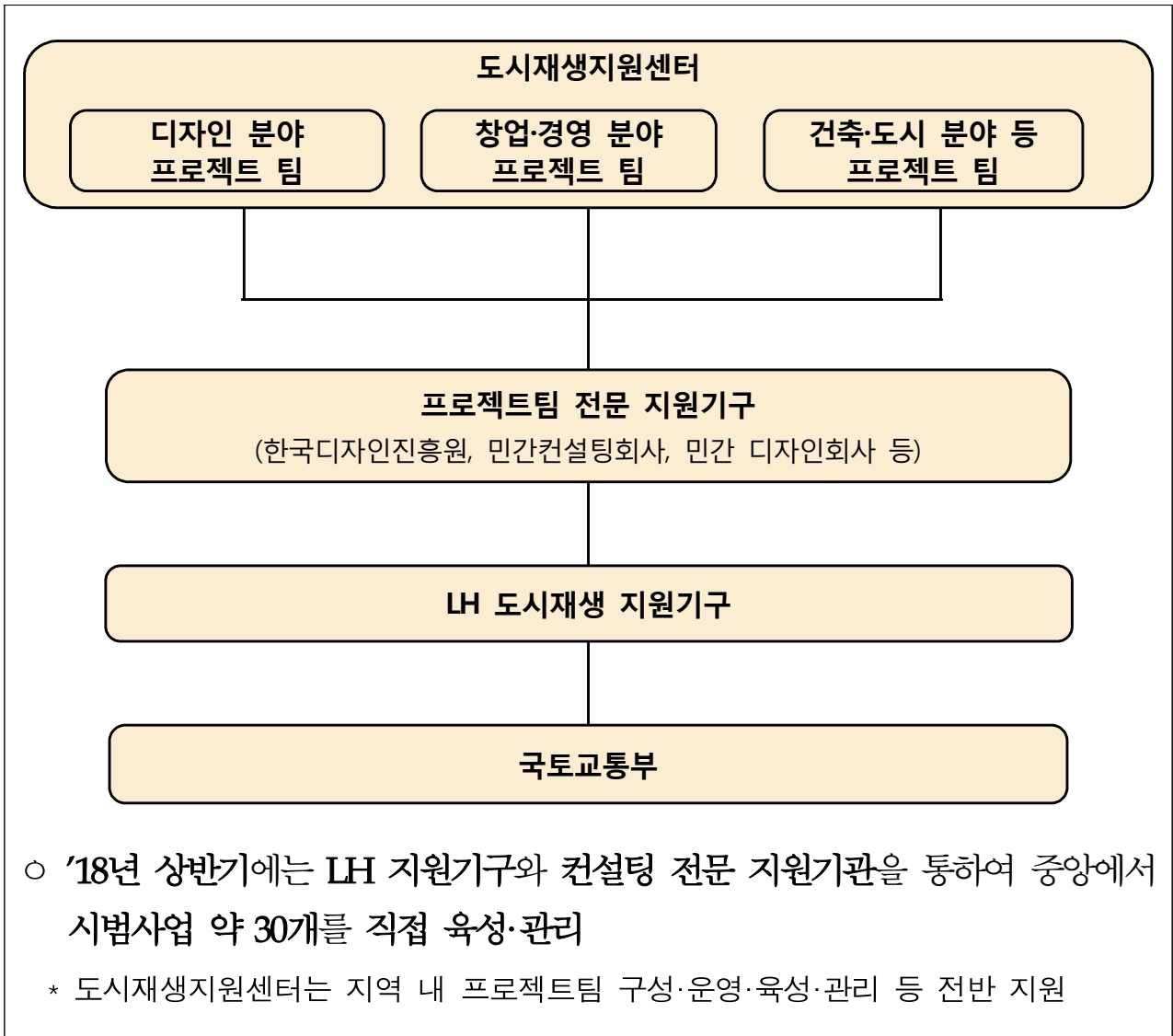
- (자금지원) 팀당 약 1,500만원 이내의 전문 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
 - (국가지원 사업의 경우) '16년 선정 도시재생지역 및 '17년 선정 뉴딜 시범지역 내인 경우, 도시재생 사업비(국비, 지방비 매칭)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비용을 충당*(선지급 가능)
 - * 지자체는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비 지원계획을 제출
 - (국가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) 팀당 약 1,500만원 이내의 컨설팅 및 교육, 운영보조 등을 지원(별도 지원)
- (사업 참여 지원) 도시재생뉴딜 계획수립·사업시행 과정에서 프로젝트팀을 통해 설립·운영된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 지원
 - (지원주체) 지자체, 공공기관* 등
 - 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
 - (지원내용)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,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·운영 업체 선정, 공공시설 임대 시에 해당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
 - *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시행가이드라인 반영 예정

□ 지원체계

- (기본방안) 지역·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·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·관리·성과창출 등을 지원
 - (지자체) 프로젝트팀의 예산지원(국비지원금 교부, 자체예산 편성 등), 프로젝트팀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방안 마련 지원, 지역 전문가 및 기관(대학, 연구기관, 지방공사 등) 매칭 지원, 프로젝트팀 성과 활용방안 강구

- (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) 현장전문가 매칭, 센터 자체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, 갈등관리 등 현장차원의 지원, 프로젝트팀 운영 내용의 공개 및 의견수렴
- (국토부·LH지원기구) 전문가 관리 및 발굴, 예비전문가 교육, 프로젝트팀 성과관리 등 지원 및 기획 총괄
- (전문 지원기관)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가 풀 제공, 역량강화 및 기술정보 지원, 평가참여 등 프로젝트팀의 전반적 구성·운영 지원

< 참고: 2018년 상반기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지원 체계 >



※ '18년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팀 총괄 관리·지원업무를 광역지자체(광역 지원센터)에서 수행하도록 추진

□ 과제유형

- 내용에 따라 사업·창업분야, 재생사업계획 수립 분야, 재생이슈 도출 분야로 구분

분야	과제 예시		
사업 창업 분야	주택· 건축 분야	집수리	저소득층 무상 집수리(정부지원), 실내 인테리어·창호·지붕 등 단순 기능교육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
		주민공동 시설관리	지역 내 담장 허물기, 벽화개선, 도시농업, 쓰레기 수거 시설 등 관리 일자리
		공간기획	빈집·빈점포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및 작업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제공 및 공간 프로그램 기획
	사회· 공동체 분야	생활협동 조합사업	지역 특산품 제작·판매, 마을 게스트 하우스 운영, 마을카페 운영, 식재료 공동구매, 특산품 생산·가공 시설 공동이용 등 마을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
		커뮤니티 서비스	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육아,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돌봄, 장애인돌봄, 건강유지를 위한 헬스케어 등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
		지역 행사, 축제 기획	지역 브랜드 개발, 관광 프로그램 개발, 마을 해설 및 도시 여행안내·골목 투어 프로그램 등 운영
	문화 예술 분야	공예품 제작, 판매	생활 공예품을 제작하고, 아트마켓 등 지역 행사를 개최하여 공예품 판매
		문화·관광 체험업	원도심 해설, 도시 여행안내, 골목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익창출
		예술 공동 작업장 운영	공동 작업장 개소를 통하여 예술분야 스타트업 지원, 지역 내 기술 장인과 신규 창업자 간 공동 협업공간 기획을 통하여 의류업, 제조업 등 특화 공간 조성·운영
재생 사업 계획 수립 분야	(공간) 골목길·주차장 조성, 전기줄·쓰레기 등 저층주거지 생활경관개선 등		
	(사회)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·활용(어린이집, 커뮤니티센터, 도서관, 작은 영화관 등)		
	(환경) 전통경관 보존 및 특색경관 개선, 도시 숲 조성, 공원 및 정원 조성 등		
	(문화) 지역 정체성 교육,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문화분야 도시재생 계획수립		
재생 이슈 도출 분야	지역의 유·무형 현황조사 , 지역주민의 심층수요 (복지·문화공간 등 필요수요) 분석을 통한 재생 이슈 도출 (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목표·비전 초안·마련 등),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뉴딜사업 준비		

□ 과제 유형별 결과물

유형	사업 및 창업	재생사업계획 수립	재생이슈도출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수요에 기반한 창업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조직설립 - 기존에 설립된 조직 (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의 경영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한 지역문제해결 또는 특정 목표 달성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내용 및 결과물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심층 수요 분석을 통한 재생 이슈도출
과제 분야 (예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·건축, 사회·공동체, 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창업아이템 발굴 - 사업기획, 경영전략 수립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차쓰레기 문제 해결, 지역 경관보존, 도시숲 조성,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마련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통계자료 만들기, 지역 정체성 발굴 - 지역 청년·활동가 네트워킹 - 도시재생 계획안 로드맵 초안 수립 등
결과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(조직설립) 및 사업체 운영 - 기존 조직 경영개선 방안 도출·적용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내 단위사업의 운영 방안 마련 - 건물 공간기획(빈집·반점포 등 활용 프로그램 구상) - 주차쓰레기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물리적 환경 정비, 주민 간 규약 마련 - 주민참여 경관협정·지구단위계획, 조례마련 등 제도설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유·무형 현황조사 결과물(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반영 가능) - 해당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 목표·비전, 단위사업계획 등 초안마련

※ 재생사업 계획수립, 사업·창업 유형은 구체적인 목표가 사전에 결정된 과제이며, 재생이슈도출 유형은 프로젝트팀 운영 과정에서 이슈도출 및 목표수립을 추진하는 과제임

※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구성·운영된 팀은 향후 '도시재생 뉴딜 주민 협의체'로 발전 가능

<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지원내용 >

	비목명	하위비목	비고
지원가능	지급수수료	강사비, 보조강사비, 심사비, 자문비, 원고료 등	· 강사비, 심사비, 자문비 : 1회(2시간)당 20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(최대 2회까지 가능, 내부 강사의 경우 강사비 지급 불가) · 보조강사비 : 위의 규정과 예외로 운영 주체가 별도 지정한다. · 원고료 지급기준(A4 1매 기준) : - 국문 : 10,000원 - 외국어 : 12,000원
	홍보인쇄비	현수막, 포스터, 홍보물, 책자, 자료집, 홈페이지 개설비용 등	
	제품제작비	제작비, 개발비, 디자인비 등	
	통신비	우편 소포, 택배 등 발송비용	
	물품구입비	행사용품, 교육용품,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	· 행사, 교육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구입가능하나 사업종료 후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구입 불가(예: TV, 냉장고, 빔프로젝터 등) · 사무용품의 경우 운영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무용품 구입은 불가하며 행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사무용품 비목만 인정한다.
	임대료	장소 및 장비 임대료	· 물품구입비로 구입 불가한 필요장비는 임대형식으로 이용 가능
	교통비	전세버스 임차료, 대중교통 이용비용 등	· 실사용비를 원칙으로 한다.
	식비	식비, 간식비, 다과류 구입비용 등	· 식비 : 1인당 8천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. · 다과비 : 1인당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.
	숙박비	숙박비	· 워크샵, 현장답사 등의 일정으로 필히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 · 숙박비 산출기준(1인) : 서울 7만원, 광역시 6만원, 그 외 5만원
	입장료	입장료, 안내비 등	· 실사용비를 원칙으로 한다.
지원불가	공사비	공사비, 시공비, 리모델링비, 보수비 등	· 공사비 비목은 일체 지급 불가
	보험료	여행자 보험료 등	· 현장답사 등에 소요되는 여행자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보험료 비목은 지급 불가
	기타	이체수수료, 전기·수도를 비롯한 기타 세금항목 등	· 지급 불가

□ 신청 제외대상

-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경우 구성형태 및 추진기반을 갖추었으나, 실질적으로 공동체성 또는 지역성이 취약*한 경우

* 가족단위 설립 및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리사업 등

-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거나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
- 기타 지원기관에서 선정을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

신청 및 평가 방법

□ 신청 및 접수 : 2018년 3월 14일(수)~4월 20일(금), 공휴일 포함 38일간

- (접수절차) 신청팀(조직)은 지자체와 해당 기초(부재시 광역)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'사업지원계획서'를 첨부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고, 각 센터가 취합하여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신청

* 광역 또는 기초 지원센터가 모두 부재하는 경우, 지자체 도시재생전담기구를 통해 제출 가능

- (접수방법)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이메일(hellourban@lh.or.kr)로 신청

□ 평가방법 : 분야별 전문가, 프로젝트 팀 지원기관 등을 기반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

* 세부 평가항목 : 붙임6

□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등 절차

신청 접수	평가 및 선정	프로젝트팀 구성	프로젝트팀 운영	도시재생 사업 반영
주민조직 → 도시재생 (현장) 지원센터 → LH 도시재생 지원기구	1차 : 서류심사 (사업계획서 검토) 2차 : 서면평가 (필요시) 3차 : 집중평가 (워크숍 형식) 평가위원회 구성 : 분야별 전문가 (LH지원기구, 전문 지원기관 추천)	워크숍 : 프로젝트팀 선정 및 최종 팀 구성(주민-전 문가 매칭)	주민 (약 5인) + 분야별 전문가 (약 3월)	도시재생활성 화계획반영 (단위사업),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, 조직설립을 통한 사업체 운영 등

□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사업지원계획서*

* 해당 지자체 도시재생전담기구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함 (서류 누락 시 공모사업 신청불가)

3 기타 참고사항

□ 문의사항

- (사업내용) LH도시재생지원기구 최정은 선임연구원(042-866-8372)
- (예산집행) LH도시재생지원기구 박성준 과장(042-866-8378)

□ 기타사항

-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(공고 등)을 확인·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모 당사자에게 책임 귀속
- 신청서·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사업 선정 이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급처리

□ 평가방안

- (방식) 프로젝트팀은 LH 지원기구에서 **공개모집**, 선정·평가는 **절대평가** 방식(총점 70점 이상)
 - * 단, 지원팀이 많은 경우 예산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점수를 가감해 선정할 수 있음
- (절차) 1차 평가 : 서류적격심사 → 2차 평가(필요시) : 서면평가 → 3차 평가 : 집중평가
 - (서류 적격심사) LH 지원기구, 전문 지원기관에서 **사업계획서**(구비서류, 기본요건 충족)의 **적격여부**를 사전검토
 - (서면평가)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하여 최종선발 팀(약 30팀)의 **2배수** 내외 프로젝트팀 선정
 - (집중평가) 국토부·LH도시재생지원기구·전문지원기관이 주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**최종 선정**을 확정
 - *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평가로 ‘① 초기계획안 발표 → ② 전문 지원기관 피드백 → ③ 계획안 수정 → ④ 최종발표 → ⑤ 평가 및 최종선정 과정으로 진행
- (중복지원 제외) 동일항목, 동일예산에 대하여 타부처 등의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, 중복지원 제외
- (BP발굴) ‘18년도 지원기간 종료 이후 사업결과 및 보고서를 토대로 우수사례 선정, 도시재생 한마당과 연계하여 홍보 및 포상

□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모집 · 평가 · 운영 일정(안)

추진내용	추진기간	비 고
모집공고	3월 중	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
↓		
사업설명회	3월 말	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
↓		
신청 및 접수	3월 중~4월 중	LH도시재생지원기구
↓		
서류심사	4월 말	LH도시재생지원기구, 평가위원회
↓		
집중평가(워크숍)	5월 초	관계기관, 예비주민참여 프로젝트팀,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
↓		
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시범사업 운영	5월~7월	프로젝트팀
↓		
결과 및 정산보고	~8월	프로젝트팀,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

과제명 :

과제 목적

-

- ※ 사업·창업, 재생사업계획 수립, 재생이슈도출 3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고,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
- ※ 도시재생뉴딜의 목표인 주거복지실현, 일자리창출, 도시경쟁력 향상,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

과제개요

(1) 추진기간 및 내용

-

- ※ 컨설팅 및 운영비 국비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(~'18.7월) 이내이며, 지원기간 내 과제 수행 계획 및 이후 계획안(창업, 조직설립·운영, 주민협의체 구성·운영, 도시재생계획 제안·시행 등)을 적시
- ※ 국비지원 기간은 3개월 이지만, 이후 지자체 자체지원 기간 등 포함 권장

(2) 과제수행 배경 및 필요성

-

- ※ 지역사회 물리적, 비물리적 현황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분석,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계획, 제도 등 도출

(3) 과제수행 공간적 범위

-

- ※ 행정구역상 주소 기입
- ※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인지 여부,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여부 등 적시

세부 사업내용

세부사업명	사업분야	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	실행 일정

※ 세부사업명 : 각 세부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
 사업분야 : 각 단위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
 ☞ 주민참여 교육, 온라인 홍보, 네트워크 구축, 제품제작, 사업계획안 작성 등
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: 세부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실행 방법을 작성
 실행일정 : 각 단위사업의 실행 시기 및 기간 등 기재

사업 운영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

구분	기관명	담당자(연락처)	기관별 세부 역할	비고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
※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자하는 기관 및 기관별 담당자, 역할 등을 기입
 ☞ 지자체, 도시재생지원센터, 지역 내 대학, 공공기관, 연구소, 민간기업, 금융기관(신협, 생협, 농협, 민간은행) 등
 기관별 세부역할 : 도시재생대학 강사 활용, 활동 공간제공,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
 비고 : 네트워크 구축 상황(예정, 완료) 등

추진일정 및 향후계획

구분	주요활동	일정	비고
1			
2			
3			

-

※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 활동의 일정계획을 적고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
 ※ 향후계획은 본 사업 종료 후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지속·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

사업의 기대효과

-

※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, 주민 역량 증진 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
 ※ 사업이 해당 지역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적인 측면을 기재
 ※ 시장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요 충족, 지역문제 해결,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, 지역공동체 회복 등
 ※ 차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 등에 반영, 신규 뉴딜사업선정시 계획안에 반영, 창업(조직설립), 기존 조직 경영개선,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등

사업 기록화 및 홍보 전략

-

- ※ 사업의 결과물을 포함한 책자, 브로슈어, UCC 등의 기록화 계획을 기술
- ※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 기술
 - ☞ 마을신문, 지역언론, 지역사회기반의 SNS 활용 등
- ※ 지역 내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
- ※ 지역주민 대상 홍보·참여 독려방안 뿐 아니라, 과제수행 완료 후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도 포함 장려

예산계획

(단위:천원)

구분	단위사업명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			
보조금	소계	금액	산출내역	비고

- ※ 산출내역 : 단가(원) * 횟수 = 금액 등으로 기입하며, 산출내역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조 설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사유를 제시함
- 소계 : 사용목적에 알 수 있는 성격의 항목으로 작성
 - ☞ 제품제작, 자문 및 컨설팅비, 홍보비, 광고비 등
- ※ 4페이지에 제시된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, 사업계획서에 적시하는 필요예산은 가안이며, 추후 전문지원기관의 자문을 거쳐 **추후 변경 가능**

타 사업(지자체, 타부처 등) 지원 내역

참가팀명		
제안과제명		
사업대상지	· 주소 : · 도시재생 사업지역(해당사항에√ 표기하시오) <input type="checkbox"/> 선도지역(14년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지역(16년) <input type="checkbox"/> 뉴딜선정지역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활성화지역 내에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지자체 지원계획	뉴딜사업 연계계획	·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경우,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 (제안된 사업내용을 활성화계획에 포함, 단위사업에 반영, 프로젝트 팀을 도시재생뉴딜 주민 협의체로 발전할 계획 등) ·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인 경우 활성화계획수립 및 단위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등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의 과제 내용을 반영할 계획 등
	시설 및 인력 지원계획	· 지역 내 대학, 연구소, 공공기관, 금융기관,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협업계획, 기술지원 계획 등
	자금 지원계획	· '16년 선정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또는 '17년 선정 뉴딜시범사업인 경우 도시재생사업비를 통한 자금지원계획 · 국비지원 종료 후(3개월 후) 지자체의 자체적인 자금지원 계획
	기타	·
담당자	(소속) (성명)	(날인)
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계획	센터 자체사업 연계계획	· 센터 내 지원 프로그램 연계, 사업연계 등
	시설 및 인력 지원계획	· 센터직원의 프로젝트 팀 참여 등
	기타	·
담당자	(소속) (성명)	(날인)

- 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지원사업 -
개인정보 처리(수집·이용·제공) 동의서

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'개인정보보호법'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며,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
1)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

국토교통부는 '2018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' 접수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가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집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개인정보 수집방법 : 사업 신청서류를 통한 수집

2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기간

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 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집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	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,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, 모니터링, 평가 등 활용	5년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」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정보제공주체					
성명	서명	성명	서명	성명	서명

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자료	배점
지원의 필요성	· 참여자의 공동체성 (주민, 전문가 각 5인 내외.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제외)	신청서	20
	· 도시재생 뉴딜과의 관련성 (공간적 범위가 도시재생지역 내인 경우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, 도시재생지역 내가 아닌 경우, 향후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)	신청서 지자체,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	
	· 참여자의 도시재생대학(교육) 참여여부 (주민 중 2인 이상 가점사항)	신청서	
계획의 적절성	· 도시재생 뉴딜 목표와의 부합성 (주거복지 실현, 일자리 창출, 도시경쟁력 향상, 사회통합)	사업계획서 (사업목적, 사업내용)	50
	· 지역 네트워크 협력방안 (공공기관, 지역기업, 주민단체, 타 중간지원 조직 등)	사업계획서 (사업운영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방안) 지자체,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	
	· 지역사회 요구 반영 (지역사회에 대한 사전 물리적, 비물리적 현황조사 등 근거)	사업계획서 (사업배경 및 필요성)	
	·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(시장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요 충족, 지역문제 해결,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, 지역공동체 회복 등)	사업계획서 (사업의 기대효과)	
사업의 효과성	· 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 (차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 등에 반영, 신규 뉴딜사업선정시 계획안에 반영, 창업(조직설립), 기존 조직 경영개선,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등)	사업계획서 (추진일정 및 향후계획, 사업의 기대효과) 지자체,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	30
	· 사업 자료 기록물 및 홍보 전략의 효율성 (결과보고물 포함, 마을신문·라디오 등 마을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, SNS·지역언론 활용 등, 지역주민 대상 홍보·참여 독려방안,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)	사업계획서 (기록화 계획 및 홍보 전략) 지자체,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	
계			100

※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(절대평가) 선정